

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안 설명

발의자 : 신동원 의원(노원1, 국민의힘)

의안번호 : 2242

서울특별시의회  
보건복지위원회

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.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.

안녕하십니까.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입니다.

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
서울시의 출생률은 0.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미래 성장동력의 감소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.

이에 그 동안 출산·육아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, 주거비가 높은 서울에서도 안정적으로 출산·육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(정의) 조항의 제9호를 신설하여 ‘1인자영업자등’의 범위

를 규정하였으며, 이와 함께 제4조의8(1인 자영업자등 출산·휴가 급여 지원) 또한 신설하여 1인 자영업자등 배우자 출산·휴가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등 임신부 출산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안 제5조(자녀 양육부담 경감)를 개정하여 임신부,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육아용품 구매 및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동 개정안을 통해 약 2,092명의 '1인 자영업자등'의 배우자 및 약 2,060명의 '1인 자영업자등' 임신부가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범위 내에 있는 약 1,380가구가 주거비를 지원받아 서울시의 출생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출생률 제고는 국가존속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동 개정안은 서울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실질적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의 취지를 부디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